



[]외래 [V]입원 ([V]퇴원 []중간) 진료비 계산서 * 영수증

환자등록번호		환자 성명		진료기간		야간(공휴일)진료	
202601-189		이상진		2026-01-26 ~ 2026-01-26		[]야간 []공휴일	
진료과목		질병군(DRG)번호		병실	환자구분	영수증번호(연월-일련번호)	
비뇨의학과				101 -1	국민건강보험	202601-70476	
항목	급여			비급여	급여산정내용		
	일부 본인부담	전액	본인부담		⑥ 진료비 총액 (①+②+③+④)		
	본인부담금	공단부담금	본인부담		⑦ 공단부담 총액 (②+⑤)		
진찰료	3,768	15,072			⑧ 환자부담 총액 (①-⑤)+③+④		
입원료	1인실				⑨ 이미 납부한 금액		
	2-3인실	6,862	27,448		⑩ 납부할 금액 (⑧-⑨)		
	4인실이상				⑪ 납부한 금액	카드	13,306,250
식대				현금영수증			
특약 및 조제료	행위료				현금	0	
	약품비				합계	13,306,250	
주사료	행위료				납부하지 않은 금액 (⑩-⑪)		
	약품비				0		
마취료							
처치 및 수술료							
검사료	95,621	382,487					
영상진단료							
방사선치료료							
치료재료대				13,200,000	신분확인번호		
재활 및 물리치료료					현금승인번호		
정신요법료					*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급여 초음파는 검사료에 합산됩니다.		
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							
선택항목	CT 진단료						
	MRI 진단료						
	PET 진단료						
	초음파진단료						
	보철 교정료						
	제증명수수료						
선별급여							
65세 이상 등 정액							
정액수가(요양병원)							
정액수가(완화의료)							
포괄수가진료비							
기타							
합계	① 106,250	② 425,000	③ 0	④ 13,200,000			
상한액 초과금	⑤ 0						
요양기관 종류	[V]의원급·보건기관 []병원급, []종합병원, []상급종합병원						
사업자등록번호	1619701551	상호	강동비뇨기과	전화번호	02-541-7773		
사업장 소재지	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89 (잠원동) 신사역 멀버리힐스			대표자	임지석 [인]		
메디칼타임 위 10층				출력일자: 2026년 04월 07일			
항목별 설명				일반사항 안내			
<p>1. 일부 본인부담: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, 요양기관 지역, 요양기관의 종별, 환자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래 본인부담률: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% ~ 60%(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 ~ 2500원 0% ~ 15%) 등 - 입원 본인부담률: 20%(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% ~ 10%) 등 <p>※ 식대: 50%(의료급여는 20%)</p> <p>CT*MRI*PET: 외래 본인부담률(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)</p> <p>2. 전액 본인부담: 『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』 별표 5 또는 『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』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(의료급여)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.</p> <p>3. 상한액 초과금: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843만원(환자 자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)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</p>				<p>1. 이 계산서 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2. 『국민건강보험법』 제43조의2 또는 『의료급여법』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(☎1644-2000, 홈페이지: www.hira.or.kr)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</p> <p>3. 계산서*영수증은 『소득세법』에 따른 의료비 공제 신청 또는 『조세특례제한법』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(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)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"현금영수증(지출증빙)"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 (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: http://현금영수증.kr)</p>			
주(註):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.							